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1 -

- 2011년도 정책자료집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정 책 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총 소요기간 및 예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간 : 2011.3.2~12.30</li> <li>○ 소요예산 : 31,640 백만원 (국고보조금 21,079 백만원)</li> </ul>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친환경 녹색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li> <li>○ 생계보호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소득 증대 목적</li> <li>○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도모</li> </ul>		
추진경과	2011.1.12. 행정안전부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통보 2011.3.2. ~ 6.30. 2011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11.8.1. ~ 12.30. 201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진흥본부장 : 신면호 (총괄본부장)</li> <li>○ 산업경제기획관 : 유재룡</li> </ul>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정책과장 : 주용태 (총괄반장)</li> <li>○ 공공일자리팀장 : 박동수 (검사공무원)</li> <li>○ 담당자 : 구민수 (감독공무원)</li> </ul>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로구청, 중구청, 용산구청, 성동구청, 광진구청, 동대문구청, 중랑구청, 성북구청, 강북구청, 도봉구청, 노원구청, 은평구청,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양천구청, 강서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영등포구청, 동작구청, 관악구청, 서초구청, 강남구청, 송파구청, 강동구청</li> </ul>		
기타			
공개구분	<b>공 개, 비공개( 비공개인 경우 해당번호 기재 )</b>		

※ 공개구분란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 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번호를 ( )안에 표시한다.

# 정책자료집 수록내용

## (목 차)

1.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계획 및 종합지침 통보	1
2.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확정내시 통보	91
3.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통보	93
4. '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업상담 등 사후관리 철저 통보	95
5.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추가보완(2차) 및 하반기 추진일정 통보	96
6. 201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	98
7. 장마철과 폭염 혹서기 안전 및 보건관리 교육 철저 시행 협조	100
8. 20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추가 보완 통보(3차)	101
9. 2011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 점검계획 통보	102
10.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결산계획 통보	106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2011. 1. 11**



**행 정 안 전 부**

# ◀ 목 차 ▶

제 1장 적용 범위 .....	1
제 2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개요 .....	2
제 3장 신청자 접수 .....	8
제 4장 대상자의 선발 .....	15
제 5장 예산의 배정 및 집행 .....	24
제 6장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	27
제 7장 사업의 시행 .....	36
제 8장 신청자 및 참여자의 관리 .....	39
제 9장 사업의 지도·감독 .....	43
제10장 기타 행정사항 .....	56
제11장 추진일정 .....	59
【붙임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안) .....	60
【붙임 2】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	62
【붙임 3】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64
【붙임 4】 청년일자리사업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	65
【붙임 5】 '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도별 예산배정 현황 .....	66
【붙임 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리카드 .....	70
【붙임 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 작업·교육일지 .....	72
【붙임 8】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	74
【붙임 9】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확인서 .....	75
【붙임 1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76
【붙임 1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출석부 .....	78
【붙임 12】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	79
【붙임 13】 안전사고관리대장 .....	85
【붙임 14】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요율 .....	86
【붙임 15】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요청서 .....	87
【붙임 16】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 기준 .....	88

- 본 지침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으로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①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11. 3. 2 ~ 6. 30(1차), 8. 1 ~ 11. 30(2차)
  - \* 자치단체별 사업 준비상황 등 여건에 따라 참여인원 및 조기 사업추진 가능
- 참여 인원 : 4만명(1차 2만명, 2차 2만명)
- 사업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244개)
- 사 업 비 : 2,484억원(국비 : 1,244, 지방비 : 1,240)

②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③ 예산 배분계획

#### ①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	국비	(%)	지방비	(%)
계	248,400	(100)	124,400	(50)	124,000	(5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98,400	(80)	99,200	(40)	99,200	(40)
청년일자리사업	24,800	(10)	12,400	(5)	12,400	(5)
마을기업육성사업	24,800	(10)	12,400	(5)	12,400	(5)
운영비(행안부)	400		400			

\* 각 자치단체별 실제 배분비율은 다를 수 있음

#### ② 자치단체 지원기준

- 국비·지방비 비율 : 각 50%(국비 124,000백만원)
  - \* 지방비는 특·광역시에서 시·도비 및 시·군·구비 배정 비율은 재정사정에 따라 광역단체에서 자율 결정

### ③ 위원회 운영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일자리 창출 관련 위원회 구성여부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④ 대상사업(예시)

-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8대 안정적·시장형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집중추진

《 '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 》

① 안정적·시장형 일자리사업	②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①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② 폐자원 재활용 사업 ③ 청년일자리사업 ④ 마을기업육성사업	⑤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⑥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⑦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⑧ 주민숙원사업 -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 -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 - 주거환경 및 마을 경관 조성 - 생활용품 수리사업 등

- 안정적·시장형 일자리사업(총사업비의 40%)
-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총사업비의 60%)

#### ①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

-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목표 3,500명)

한시적 일자리사업을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발전

- 지원대상 : 종업원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골목길 슈퍼마켓도 법률상 중소기업임)을 말하며, 중소기업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기업 임

**【붙임 16】** :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

- 대상기업 : 일자리 DB에 있는 기업체 중에서 자치단체가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자치단체는 임금수준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 지원금액 : 신규 취업 장려수당(1인 월 60만원 이내)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4대 보험, 간식비 등 포함)
  - \* 4대보험은 해당기업에서 가입 및 부담
- 지원기간 : 지역공동체일자리 기간('11.3~6월, 8~11월까지 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기업에서 계속 고용할 경우 추가 2개월까지 총 360만원 범위내 지원 가능
- 대상자 알선 : 신청자와 기업간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공동 면접 등이나 희망 대상자중에서 선발·알선을 통해 채용
-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일자리사업단 운영
  - 지역기업(일감 제공, 기술교육, 참여자 정규직 채용보장), 자치단체(공동작업장 마련, 일정기간 근로자 임금지급), 취약 계층(사업단 운영)과 연계한 지역단위 공동작업장 개설
  - 기업과 자치단체간의 MOU협약체결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 부산 해운대 반여2동 : 취약계층 공동작업장(희망공동작업장) 운영, 취약 계층 50명 고용
- 일자리 발굴단 운영
  - 자치단체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 현장에서 구인신청을 받아 구직 희망자와 연결
  - 취업상담창구 개설, 구직 희망자에게 구인업체 정보 제공

## ② 폐자원 재활용 사업

- 버려지는 폐현수막, 폐가전제품, 폐식용유, 영농폐비닐류, 폐스티로폼, 헌옷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거·분류하여 자원의 재활용
- 재활용품 판매를 통한 수입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③ 청년일자리사업(목표 4,000명)

: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추진

- 지역특산품·중소기업 마케팅 전문가 양성·취업지원
  -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 마케팅 서포터즈 육성
    - \* 교육과정 이수 등 전문자격을 갖춘 참여자에게 취업기회 부여
  - 지역특산품 판매 전문가 양성, 소호(SOHO) 창업 유도
    - \* 전문교육과정 이수 및 오프라인 판매 지원, 홈쇼핑 시스템 구축 지원
- 산학관 연계 맞춤형 청년일자리 양성사업 추진
  - 지역 일자리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채용 후 기업특성에 맞는 기술교육 병행 추진
    - \* 지역기업(채용) + 전문기관(기술교육) + 지자체(행정·인건비지원)
- 자원봉사센터 유급 서포터사업
  - 자원봉사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기획, 봉사자 모집, 수요처 연계 및 자원봉사 실행, 실적관리 등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사업

## ④ 마을기업 육성사업(목표 500개 기업) - 별도 세부지침 시달

-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원(향토·관광·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주민주도로 개발
-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지역 NPO, 마을주민회 등) 위주로 마을주민의 출자 등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된 사업 운영

## ⑤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 ○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목표 1,200가구)

-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자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자 선정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집수리 자활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문 인력 수급 및 사업관리, 필요시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전기배선 및 도배 등의 주택 내부수리 서비스 제공
  - \* 석면제거 및 주거복지 차원 증진 측면에서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 가구당 소요예산 : 840만원 정도
  - \*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의 재료비는 사업비의 85%까지 가능

### ○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목표 15,000가구)

-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자가 주택의 보일러 수리, 창호 교체, 화장실 정비, 싱크대 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벽체 단열재 보강 등
  - \* 장기임대주택(예:10년)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대상가구를 선정 가능

### ○ 폐·공가 개·보수 및 정비사업

- 폐·공가를 수리후 주거 불안 기초수급자 입주 또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반드시 주택 소유자의 승낙필요)

## ⑥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 마을 주변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만남의 장소·휴식공간·마을 문화공간 조성
  - \* 남양주시 “꽃가람공원 조성” : 마을 우범지대 우려되는 도로 교각하부를 마을 휴식·문화공원으로 조성, 지역예술가 참여로 아트벤치 및 조형물 설치, 음수대·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 지역의 특화된 역사·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생태체험마을, 테마공원, 자연학습장을 조성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 활성화 하여 자립기반 마련
- \* 김해시 “농촌생태 체험학교 조성” : 폐교를 「농촌생태 체험학교」로 조성하여 농촌을 배우고 체험하는 농촌문화 교육장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

### ⑦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절감 등
  - 결혼 이주여성을 ‘외국어 교사’, ‘다문화 홍보교사’로 활용 여러 나라의 역사문화언어 등에 대한 교육으로 다문화사회와 문화 소통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습도우미·학교생활 적응 지원

### ⑧ 주민숙원사업

-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
  - 등·하굣길 보행안전지도 (Walking School Bus)
  - 학교 주변 등 우범지역 수시 순찰활동 전개
  - 스쿨존 어린이 안전보행을 위한 환경정비사업 등
-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
  - 물놀이 사고 위험장소에 안전관리요원 배치(7월부터 추진)
  - 농어촌 마을갯길 사고다발지역 개선 등
- 주거환경 및 마을 경관 조성사업
  - 서민 밀집지역 진입로 및 골목길 정비, 산업단지 주변 환경 개선, 마을 담장벽화 거리조성, 공공시설물의 도색 및 정비 등
- 자전거 및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수리사업
- 구제역 확산방지 등 자치단체 현안사업
  - \* 등산로 정비, 동네마당조성, 풀 뽑기, 불법광고물 정비 등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중복 및 비 생산적사업은 대상사업에서 가급적 제외

1 신청 대상자의 범위

- ①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2011년 최저생계비 120%~150% 범위(예시) 》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120% 범위	639,100	1,088,196	1,407,745	1,727,296	2,046,845	2,366,394
150% 범위	798,875	1,360,245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2010.8.31)

- 신청자들에 대한 순차적 선발을 위하여 '선발기준 점수표' 활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실직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등에 가점 부여
  -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우선선발
  - \* 실직 및 휴·폐업자 : 행정기관 또는 실직·휴·폐업 기관의 증명서
    - 실직 및 휴·폐업 증명 대상 : 2010.1.13 ~ 2011.1.12 사이
  - \*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 노동강도 및 지역여건 등 단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연령대별 참여자 선발 규모를 달리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도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참여 가능

- ② 단,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단,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청년층(만39세)까지 참여 가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 상향 조정  
(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2년 2세, 2년이상 3세 연장)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의 청년미취업자의 경우 15세 이상부터 참여가능(미성년자 취업동의서 징구)
    - 【붙임 4】 : 청년일자리사업 미성년자 취업 동의서
  - 소득·재산 기준 및 배제대상 조건은 없음

## ② 배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 \* (예) '07. 공공근로(5.2~5.20), '08년 공공근로(3.2~4.20), '09년 희망근로(6.20~6.25), '10년 지역공동체(9.2~9.13)의 경우 배제대상임
-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같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지역 사정에 따라 150% 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가구 2인 참여자, 청년미취업자는 1가구 2인 참여가능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 되는 자
- 1차 선발되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포기자는 2차 선발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③ 신청자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 ① 신청자 접수기간

- 참여대상자 신청접수는 접수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단위 사업(8개 사업)별 모집 인원을 정하여 접수 및 선발
  - 단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참여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 \* (예) 폐자원 재활용 사업의 경우 모집 계획인원 50명중 65세이상 10%, 여성 20% 또는 관련분야 유경험자 등으로 참여자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모집 가능
  - 2차 접수방법 및 절차는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접수 및 심사기간은 추후 통보)
  - 1차 탈락자는 신청서만 접수(구비서류 면제, 소득 및 재산 조회는 1차 조회자료 활용)
- ⇒ 단, 합격자 발표이후 탈락자 이의신청시 공고일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 후 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따라 추가합격 또는 대기자 등재여부 결정

- 청년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별도로 참여대상자 신청접수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

**【붙임 1】** :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문(안)

-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인원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시·군·구 별로 별도로 대기인원을 선발·관리 가능

## ② 신청 구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붙임 2】**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 지부)에 일괄 조회 및 확인

\* 신청서상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로 같음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붙임 3】**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는 제외)

- 가점대상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실직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 기타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 ④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① 주소지 신청

- 이중신청 방지, 참여자격의 적격여부 검색을 위하여 주소지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접수 원칙
- 노숙자 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지역 신청 허용
- 참여자 접수단계에서 소득과 재산이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접수 거부사례 금지
  -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선발·심사과정을 거쳐 참여여부 결정

### ② 접수처 및 처리절차

- 사업참여 신청서를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접수창구에 비치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접수대장 관리
- 주소지 이외 지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는 신청서를 해당지역 시·군·구 지정 접수처에 송부
  - 근무는 주소지의 자치단체에서 실시
  - \* 우편송부는 신청기간내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
- 신청접수기관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자치단체별 안내자료 참조

### ③ 신청서 접수절차

- 8대 사업 중 자치단체별로 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수립 후 단위사업 선정
- 열거된 단위사업 중 3개 사업까지 접수
  - 신청자는 단위사업 중 3개 사업까지 희망 순위를 매겨 신청 가능

### ⑤ 사업시행기관의 조회·확인 내용 및 방법

- ① 가구 소득 : 건강보험료(공고일 직전월) 부과금액으로 확인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연금소득 포함
  -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10.12.2일 이후에 근로계약 종료(또는 중도포기)한 경우는 사업참여 전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9.3~12.2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10.8월분 건강보험료로 산정)  
단, '10.12.2일이후 민간기업 퇴직자는 '11.1월분 건강보험료로 산정
- ② 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액(지방세 자료로 조회)
  - 재산 조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자의 주택, 건축물, 토지 시가 표준액을 일괄조회
    - 광역단체에서는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행정안전부로 조회 요청

- 최종 선발자 확정후 이의신청시 재산을 차감하여야 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후 추가 선발가능
  -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입증하는 등기부 등본에 한함
-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은 심사(審査) 전·후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심사할 수 있음
  - \* 고급주택거주자, 민원제기자, 자체판단 확인이 필요한 자 등은 해당금융 기관 또는 본부에 조회
  - ⇒ 부적격 판정시 즉시 배제 조치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여부 : 사회복지담당 경유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포함) 참여 여부

-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여부 : 일모아시스템 또는 기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프로그램
- 공공근로사업 : 공공근로시스템 등 시·군·구 공공근로 DB 이용(시·군·구 공공근로 담당자)

⑤ 장애인 여부 : 사회복지(장애인)담당 경유

⑥ 공무원연금, 국방연금, 사학연금 등 수령여부 : 관련 연금기관

⑦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① 선발 주체**

-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자치단체

**② 선발 절차 및 방법****① 배제사유 조회·확인**

- 범위 : 신청자 본인
- 배제사유 대상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② 선발기준 및 증빙자료**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판단
  - 가구의 범위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 기준으로 판단
  - 의료급여 수급자(의료보호증 소지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0원”으로 간주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배제자는 연금소득으로 확인

-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i) 건강보험 납부자(부양자)와 세대를 같이 하면서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의 가구 소득 추정 방법(세대원수 5명인 경우 예시)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과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 배우자의 연금 소득을 합한 금액

〈적용 사례〉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 : 48,830원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인정액 :  $48,830 \div 0.0282 = 1,731,561$ 원

○ 신청자 본인의 연금 소득 : 50,000원

○ 신청자 배우자의 연금 소득 : 50,000원

⇒ 신청자의 가구소득 인정금액 (소득인정금액+연금소득) :  $1,731,561$ 원  
+ 100,000 = 1,831,561원 임

▶ 5인가구 120% 소득인정액인 2,046,845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득자격 조건 충족

ii) 세대를 달리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에게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의 가구소득 추정 방법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을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세대원수로 나눈 건강 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 추정금액과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 배우자의 연금 소득을 합한 금액

### <적용 사례>

- 건강보험료 납부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참여신청자 가족 : 신청자(남편 홍길동), 처 (이순남)
-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건강보험 부양가족 : 부양자(남편 홍정운), 처(박순녀), 아들(홍만중)
- 건강보험에 등재된 세대원수(5명) : 홍정운, 박순녀, 홍만중, 홍길동, 이순남
-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 : 158,230원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세대원수로 나눈 보험료 :  $139,700/5명=31,646원$   
 - 세대원 수로 나눈 건강보험료(31,646원)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소득 인정금액 :  $31,646 \div 0.0282 = 1,122,199원$
- 신청자 본인의 연금소득 : 0원(연금이 없다고 가정)
- 신청자 배우자의 연금 소득 : 70,000원  
 ⇒ 신청자의 가구소득 추정금액(소득추정금액+연금소득) :  $1,122,199원 + 70,000원 = 1,192,199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홍길동)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는 2명  
 이므로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1,088,196원을 초과하여 소득자격 조건 충족하지 못함

- '11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 건강보험료 납액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times 1.2) \times 0.0282$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120% 이하	소득인정액 (A×1.2)	639,100	1,088,196	1,407,745	1,727,296	2,046,845	2,366,394
	보험료 (A×1.2×0.0282)	18,023	30,688	39,699	48,710	57,722	66,733
150% 이하	소득인정액 (A×1.5)	798,875	1,360,245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보험료 (A×1.5×0.0282)	22,529	38,359	49,624	60,888	72,152	83,416

- 재 산 :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세 과세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 재산 조치는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자의 주택, 건축물, 토지 시가 표준액을 일괄조회
  - \* 광역단체에서는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행정안전부로 조회 요청
-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 소득 및 재산조회 없이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접수표에 의하여 선발여부 결정
  - 차상위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 등
  - 차상위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차상위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한부모가정 지원(150%이하로 자격조건 제한하는 자치단체)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세대주·부양가족
  - 세대주(가장) :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되, 여성 가장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 세대를 부양하는 여성에 대하여만 가점 부여
    -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에 남편이 있음에도 주민등록표상 여성 세대주인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 무능력을 입증하여야만 여성세대주 가점대상이 됨(형식적 여성세대주 가점 금지)
    - (예시) 근로 무능력 : 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 \* 3개월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영양·치료·재활 등 진단서(또는 진료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에 의한 확인
- 실직 및 휴·폐업자 : 행정기관 또는 실직·휴·폐업 기관의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 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은 자치단체 추진위원회에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가능

### ③ 참여자 선발절차

○ 단위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배제대상자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

- 1순위 신청자가 미달할 경우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

- 2순위 신청자가 미달할 경우 3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

- 3순위까지 미달되는 단위 사업은 「다른 단위 사업에 신청하여 탈락한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 선발 가능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사업시행 기관별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부양가족수>장애인 가족>기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순서

○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가 원칙

- 단, 청년미취업자의 경우 1세대 2인까지 허용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비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시 즉시 채용

- 예비대상자에게는 대기 순번 부여

- 근로능력 미달자는 근로시간 단축
  - 65세(1946.1.14일 이전 출생자)이상 노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이내로 근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1호(직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 2차 참여자 선발시는 자치단체별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적용
    - \* 안전사고 예방 및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시간(4H) 등 참고
  -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자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 근로 불가능 판단기준은 단위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④ 1차 추가 선발자 근무방법

- 1차 사업기간중 추가로 선발된 자가 근무일수가 3개월 미만인 자는 4개월 범위까지 2차 사업기간중 잔여일수 근무 가능

## 《취약계층 선발기준 점수표 (표준안)》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 점	비 고
<b>총점 130점</b>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0(10,0)	해당 법률 규정 : 참조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 제외)	4명 이상, 3명, 2명, 1명, 없음	20(20,15,10,5,0)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5,0)	
세대주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10(10,5,0)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	20(20,0)	참여자 본인이명
실직 및 휴·폐업자 (‘10.1.13~’11.1.12)	여, 부	15(15,0)	실직, 휴·폐업 증명서 제출
청년 미취업자	여, 부	15(15,0)	청년일자리사업 제외
재산기준	재산액 4,500만원미만	20	
	재산액이 4,500 ~9,000만원	10	
	재산액이 9,000 ~13,500만원	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15(15,10,5,0)	단위사업별 등 특 성
<b>감점사유 -40점</b>			
희망·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유사 정부지원사업참여자	최근3년(‘08. 1.13~ ’11.1.12)내 1년 참여자	-10	참여중 중도 포기자 포함  *1년 참여자 : 매년 1일 이상 임금을 받은 경우 임
	최근3년(‘08. 1.13~ ’11.1.12)내 2년 참여자	-20	
	최근3년(‘08. 1.13~ ’11.1.12)내 3년 참여자	-30	
기타 자치단체 판 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 근로능력 미달자 등	-10	

- 1)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2)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 3)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기준 조정 가능

※ 청년일자리사업 선발기준 :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선발기준 설정 추진

④ 선발의 효력

- 선발된 자는 세부사업(단위사업의 하위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단위사업 종료시점까지 효력 유지되므로 사업주체(자치단체)가 참여자의 의사를 수렴한 후 타 사업장으로 재배치 가능
  - 단, 단위사업(8대사업) 참여중에 타 단위사업으로 재배치 불가, 단위사업 종료 시 및 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시에는 예외
- 단위사업 참여자가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즉시 재배치 가능하나,
  -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가 중도포기하고 타 지역 공동체일자리 사업장으로 재배치는 불가

⑤ 선발자 관리

- 선발자가 확정된 경우 선발자 인적사항 및 임금지급 현황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시 보완
  - \* 일모아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숙지
-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장 배치 및 사업장 관리

③ 사업 근무지 조정

- 선발계획 인원에 비하여 선발된 인원이 미달될 경우
  - 타 단위사업에서 탈락한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 선발을 통해 충원 가능

- 타 사업시행기관(시·도, 시·군·구) 탈락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수요가 있는 당해 기관의 사업에 투입 가능
-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장 이동시 임금지급 등은 기관(시·도, 시·군·구)간 협의 결정
- 대기인원을 사업장 배치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희망 사업과 관계없이 배치 가능

## ① 국비예산의 배정

- 사업예산은 일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는 '11년 본예산에 반영
  - 단, 지방비를 본예산에 미반영시 국비를 우선 집행, 지방비는 반드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 시·도별 예산배정은 '11년도 자치단체 사업수요(50%), '10년도 희망근로사업 차상위 신청인원(30%), '09.12.31기준 인구수(20%)를 반영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규모 결정
  - 신청자 심사결과 선발된 인원이 배정 인원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재배정 조치(행정안전부)
- 시·군·구 배정은 '11년도 사업 수요, '10년도 희망근로사업 차상위계층 신청비율 등을 검토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자율 결정
- 재료비는 총 사업비의 40%이내 원칙

【붙임 5】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도별 예산배정 현황

## ② 예산의 집행

- ① 인건비 : 시·도별 총사업비 중 인건비는 60%이상
  - i) 취약계층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인건비 1일 35,000원(시간당 4,320원),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적용

- 4대 보험료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주 부담금
- 간식비 등
  -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 등은 1일 3,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작업장 관리요원(십장)
  - 작업장 관리요원(십장)에게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추가 수당지급 가능
- 전문기술인력 고용
  -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나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격자나 경력자 고용 가능
  - 전문기술인력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 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등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 및 기술검증을 통해 민원 발생 방지
  - \* 전문기술인력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고용가능
  -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임금단가는 분야별 정부노임단가(단가 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업종 준용) 수준으로 책정하여 인건비로 지급, 기타 근로조건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에 준하여 처리

## ii) 청년일자리사업

-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임금 결정

## ② 재료비 및 부대비

### ○ 재료비 및 부대비의 사용 한도

- 자치단체 전체 사업비 중 재료비 및 부대비는 40%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단위사업별로 재료비는 최대 65%(단,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85%)까지 사용가능
- 사업 추진중 발생하는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재료비로 사용 가능

### ○ 사업설계비, 장비 등 구입 또는 임차료, 자재비 등 집행

- 일반행정에 제공되는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 원칙
- 단,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의 장비 임차비용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많은 경우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구입 가능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 구입 비용

### ○ 현지 교통비

- 사업의 성격상 현장활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지까지 이동하는 경우는 실비(여비) 지급가능
- \* 실제 참여한 경우만 지급(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계산시 포함 안됨)

## ③ 관리비 및 운영비

-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여비 및 민간전문가 사업 현장점검 수당 등을 말하며, 총사업비의 3.0%내에서 집행하되 '재료비 및 부대비'에 포함 됨

## ① 근로자의 법적 지위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제 2조)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로 봄

## ② 임금

### ① 임금단가의 결정

- 참여자 1인당, 1일 인건비 : 35,000원(시급 4,320원×8H ≒35,000)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3,000원 이내
  - 작업장 관리요원(십장) 수당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단, 청년일자리사업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임금(교육기관의 교육·훈련비 포함)을 결정
  - 일당 : 47,000원/1일 (간식비 3,000원 및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수당 별도) 이내
  - 월급(월 20일기준) : 1,235,000원/1월(간식비 3,000원 및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수당 포함) 이내
- \* 예산 집행방법 및 항목은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음

### ② 임금의 지급방식

- 격주 또는 월급(다음달 5일이내)으로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 단, 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 사업시행기관과 근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월급 또는 격주급 형태로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 예 시 》

<p>○ 관리요원(십장)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임금 = 35,000원 X 20일 + 35,000원 X 유급주 휴일 5일 + 3,000원 X 20일 + 5,000원 X 20일 = 1,035,000원</li> <li>- 보험료 개인부담분 = 77,600원</li> <li>- 주민세 1,890원 + 소득세 180원 = 2,070원</li> <li>- 실수령액 = 1,035,000원 - 77,600원 - 2,070원 = 955,330원</li> </ul>
--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임금, 신용불량자는 임금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좌입금 가능
- 신용불량자 등에게는 민사집행법령을 근거로 사업주체인 자치단체(또는 정부)가 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약을 통해 사전 압류 금지되는 “전용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함

\* 근거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4694호, ‘10. 6. 7 및 행안부 지역경제과 - 4093호, ‘10.6.9 / 정부일자리 사회취약계층의 임금압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협약된 사업주체인 자치단체(또는 정부)로부터의 임금만 허용되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출금·이체는 자유롭게 가능

### 3] 근로 조건

####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자치단체 자율 조정 가능(22:00이후의 야간 근무는 금지)

- 단,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3일 또는 1일 4시간 이내로 근로
  - 주 3일(월,화,수) 근무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의 책임없는 사유(우천, 전염병 등)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는 목·금요일 대체근무 가능(대체근무 지정은 그 주내만 가능)
  - \* 대체근무일은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는 관계없이 임금보전 차원에서 근무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1호(직무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 안전사고 예방 및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시간(4H) 등 참고
- 정상근무 시간의 조정
  - 업무특성상 전문인력 및 근로능력 미달자 등 필요한 경우 part-time 고용 가능(part-time 임금은 시급 지급)
  -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지정 후 토·일요일 근무로 조정 가능
  - \* 근로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
  - 사업장의 원거리 위치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단축 가능
  -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사업(등·하굣길 보행안전지도, 학교 주변 등 우범지역 순찰활동)은 초등학생이 등교하는 토요일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 가능(단,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는 관계없음)

## ②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
  - \* 유급 주휴일은 사업시작일부터 1주 단위, 연차 유급휴가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월 단위로 계산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있는 경우 당해 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다만, 당해일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유급 주휴일 수당은 지급

- 사업 시행을 화요일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 금요일인 경우는 유급 주휴일 수당은 미지급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유급 주휴일 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단시간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

- 유급 주휴일 수당

#### 《 유급 주휴일 수당계산 방법 》

- ① 1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5일)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17,500원 【35,000원×(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20H/통상근로 시간40H)】
- ② 1주 3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3일)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21,000원 【35,000원×(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24H/통상근로 시간40H)】
-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요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  
유급 주휴일 수당 미 발생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계산 방법 》

- ① 1일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달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17,500원 【35,000원×(단기간 근로자 근로시간 80H/통상 근로시간160H)】
- ② 1주 3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1달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21,000원 【35,000원×(단기간 근로자 근로시간 96H/통상 근로시간160H)】
-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요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 발생

- 사업자·근로자 모두의 책임없는 사유로 1주일간 근무일이 1일도 없는 경우 유급 주휴일 수당 미지급
  - 예) 계속되는 장마, 신종플루 감염, 규제역으로 사업장 폐쇄 등
-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의 근로 대가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되, 사업 종료 시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별도로 지급
- 정상 출근하였으나 작업시작 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는 근로로 간주(오전 중단 반일근무, 14:00이후 중단 전일근무)
- 1주와 1월의 기간 계산 방법
  - 1주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시작일로부터 만1주를 말함(화요일~다음주 월요일)
    -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1월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시작일로부터 만 1개월을 말함 (3.2 ~ 4. 1, 5.22 ~ 6.21)
    - \* 3.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3.31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연차 유급휴가 수당 미 지급
- 근로계약을 2차로 나누어 할 경우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계산방법
  - 농번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작업 중단기간에는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음
  - 1차 계약기간의 근로한 잔여기간을 2차 계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 연차 유급휴가 계산(예시) 》

구분	기		간
	1차 계약	작업 중단	2차 계약
근무계약기간	'11.3.2~5.22	5.23~6.6	6.7~7.14
연차 유급 휴가 계산	3.2~4.1/1월 4.2~5.2/1월 5.3~5.22/20일	연차 유급 휴가 미계산	5.3~5.22(20일)+6.7~6.16(10일)/1월 6.17~7.14(28일)/ * 연차 유급휴가 미 발생

### ③ 공적 사유로 사업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구직상담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 공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상기(上記) 내용외에 공적인 사유는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만 인정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기간(시간) 이외의 기간(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 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유급휴일로 한다.
- 경조사로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불참을 기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다만, 해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일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사정상 사전 승인이 도저히 불가할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실시기관장은 사업 불참 승인을 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지급서류에 첨부 보관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관련 증빙 서류)

《 경조사 의 범위 》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일
	자 녀	1일
출 산	배 우 자	5일
입 양	본 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모부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④ 개별 근무상황별 임금 등 지급기준 및 기타

- 본인사정으로 지각·조퇴의 경우 실 근로시간에 한해 임금 지급
  - 관리요원(십장) 수당도 실 근로시간에 한해 수당 지급
  - 계산식 : 임금 등 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
- 정상 출근하였으나 작업장 투입 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4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미만 근무 시에는 1일 임금의 1/2을, 4시간이상(14:00이후) 근무 시에는 1일 임금 전액 지급
  - 간식비 등(3,000원) 및 십장수당(5,000원)은 전액 지급
- \* 단, 출근 금지를 통지(보)하였음에도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근무로 인정 하지 않음(개인사정 반영금지)

○ 연장근로 등의 금지

- 야간근무(당일 22:00~익일 06:00)는 불허
- 토요일, 공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대체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예외적으로 토요일, 공휴일 근무 가능

⑤ 근로 계약서의 명시

○ 사업시행기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근로자의 간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 임금에 관한 사항(일당, 임금의 계산방법, 지불방법, 지급일)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근로계약 이후 재산과다 등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 해지 됨을 명시하여 사후 민원 등 분쟁소지 방지

○ 근로계약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사업시행 기관별로 사업 및 지역여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운영

-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여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
- 작업 중단(농번기 일손부족 등)이 예상되는 자치단체는 근로 계약을 2번 이상 나누어 계약체결

예) 2011.5.23 ~ 2011.6.6일까지(2주) 작업중단이 필요한 경우

- 1차계약 : 2011.3.2 ~ 2011.5.22
- 2차계약 : 2011.6.7 ~ 2011.7.14

\* 사업중단 기간만큼 휴업수당 발생 방지

◀ 근로 계약서 : 예시 ▶

1. ○○시에서 실시하는 20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근로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 “8대사업명(예,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 작업 장소 : “사업장소 명기(예,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
  - 근로 기간 : “사업 참여 기간(예, 2011. 3.2~6. 30)” 원칙으로 하나  
자치단체의 근무여건에 따라 1·2차로 나누어 각각 계약할 수 있음
  -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단가 35,000원, 임금은 현금(계좌입금) 지급
    - 1일의 임금 및 지급방법 명기
      - 격주급, 월급(다음달 5일 이내. 단, 5일자가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 지급)으로 지급
      -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 1주(근로계약일부터) 개근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계약 종료 시 지급)
    - 1일 간식비 등 3,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무시간
    - 월~금요일(또는 토요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반드시 근무요일 지정) 또는 1일 4시간 이내로 근무
      - 단, 사업장 특성 및 사정에 따라 근로능력 미달자 등 근로시간 조정 가능
3. 기타 사항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참여자 심사 후 최저생계비 12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초과 또는 재산이 1.35억원 초과 등 사업참여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함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1. . .

○○시·도 또는 시·군·구(장) 인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은 모두 수용할 것을 계약합니다.

김 갑 돌      000000-0000000(주민등록번호)      (印, 서명)

### ① 사업발굴 및 추진방향

- 「8대 사업(안정적·시장지향형 및 지역주도형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
- 자치단체별로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수립 후 추진
- 사업선정 후 대상자 선발(일자리에 맞는 맞춤형 인원선발)

### ② 생산성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추진체계 마련

- 자치단체별 『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성
- ※ 자치단체별로 필요시 『지역일자리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가능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점검단 운영
  - 행정안전부 현장점검반 운영
    - 차관(보) 등 간부 공무원 지역별 순회·점검(수시)
    - 현장 점검반 운영(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시도별 지역일자리사업 현장점검단 운영
    -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진단,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이색사업 및 성공사례 발굴·홍보 등
    - 시도별로 10~15명 구성(50% 이상은 민간전문가 위촉)
    - 시도별 매월 기초단체수의 30% 이상 점검, 점검팀별로 반드시 민간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

### ③ 자치단체 자체공사와의 연계 추진 가능

- 도로건설·공공건물 신축(개·보수 포함), 하천정비 등 관급 공사에 소요되는 인원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원
  - 관급계약 체결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인원으로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산출
  - 지원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력(보통인부)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 지급

### ④ 농·어촌 일손돕기 추진단 운영

- 농번기(5~6월) 등에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농촌 일손돕기 추진단 운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분야(하우스, 과수원 등) 지원
  - 대상자 선정 : 자치단체의 장이 선정

### ⑤ 농기계 지원 추진단 운영

- 일손 부족 및 농기계가 없는 영세 농가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농기계 지원 추진단 운영
  - 구성 및 운영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추진단을 구성·운영
  - 참여자 선발 : 사업참여자 중 관련 농기계 사용 유 경험자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우선 지원
  - 대상자 선정 : 자치단체의 장이 선정
  - 농기계 임대 : 「농협 농기계 은행」 이용 및 재료비 사용
- ※ 추진단 농기계 사용자에 대한 사전 특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사고 예방 철저

## 6 사업장 관리카드 등 비치

-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성과 도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카드 등을 비치·관리

【붙임 6】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리카드

【붙임 7】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 작업·교육 일지

## ① 신청자 및 선발자의 사후관리

### ① 부적격자 선별·조치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수혜 금지

- 사업시행 중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배제 조치
  - 일모아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등 유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 확인
  -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세 기준 초과 사실 여부 확인 등
- 직업훈련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관계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정시 출·퇴근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시간제 근무(Part-time)를 허용
    - \* 참여자 본인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생계수당을 미지급 받는 경우에 한함
  - 사업참여자 중 직업훈련 참여수당 수급자에게는 사업 참여기간 동안 본인에게 사실통지 후 수당지급을 중단(고용노동부 등 통보)

### ② 근무자 명부 등 관리 및 사용증명서 발급

- 사업시행기관은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2조에 의거 사업장별 근무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

【붙임 8】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30일 이상 참여한 근로자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를 포기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 근무경력 확인을 요구할 경우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무확인서”을 발급

【붙임 9】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확인서

- \*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요구한 서식이 있을 경우는 그 서식으로 대체 가능

### ③ 안정적 일자리 전환을 위한 취업상담 등 기회제공

-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에게 안정적,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전환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별 취업상담 계획 등을 수립·운영
  - 지역내 구직자 특성에 맞춰 관련 취업정보센터 등 예약 후 방문·상담, 취업박람회 참석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1개월당 16시간 참여가 원칙이나 사업 성격상 부적정한 경우 축소 운영 가능(단, 전일제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8시간이상 참여)
  - \* 사업시행기관(자치단체) 주관으로 방문·상담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공적사유로 봄

## ② 4대 보험 의무 가입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은 사용자(자치단체 등)가 의무적으로 가입
- 4대 보험 가입대상
  - 국민연금 :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단,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65세 이상인 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중 일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인 자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절차 이행
    - \* 65세이상 고령자 고용보험 가입시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보험료 납부 의무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의거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
    - 국민연금 : 17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보험료 산출근거(‘11년 기준)

보험종류	사용자(자치단체) 부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 월보수액의 4.5%	▪ 월보수액의 4.5%
건강·장기 요양보험	▪ 월보수액의 2.82%+ 노인·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	▪ 월보수액의 2.82%+ 노인·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	▪ 고용안정사업 : 보수액의 0.15% ▪ 직업능력개발 : 보수액의 0.7% ▪ 실업급여 : 월보수액의 0.45% * 총 1.3%	▪ 실업급여 : 월보수액의 0.45% * 실업급여 요율변경 예정(‘11.3)
산재 보험	▪ 월보수액의 3.4% * 사업별로 1.0~4.0%	-

### ③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별 근무기간(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을 기준으로 하여
    -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해당 세무서에 신고·납부
      - 제출시기 : 다음달 10일까지
      - 소득세 : 비과세금액(간식비)를 제외한 월급여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산정
      - 주민세 : 소득세의 10%(원단위 절사)
    - 3개월 미만 사업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시기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 【붙임 10】 :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 ① 사업장 관리

### ① 사업 목표량 부여

- 사업시행 감독자는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의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

### ② 사업장 지도·감독

-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은 작업개시전에 실시
  - 참여자 출석사항 1일 3인(근로자, 작업반장-십장, 사업담당 공무원)이 모두 서명하여 부정출석 사전 방지

【붙임 11】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출석부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현장점검 : 자치단체는 시행사업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 사업장별 출근부를 비치하고 서명날인,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 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도덕적 해이) 방지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작업장 관리요원(십장)은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로 작업 중단이 필요한 경우 주관 부서의 허락을 받아 결정할 수 있음

### ③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 대상자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 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

- 3회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조퇴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3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3회 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지도 감독 규정 : 처벌여부, 처벌요건, 처벌내용, 근무자 제재 등의 지도감독규정을 각 사업 시행기관별로 제정하여 추진
  - 「근로계약서」에 지도감독 규정 명기하여 참여 불허(배제)
  - 감독근무일지에 구체적인 사항(해당근로자, 경고사유, 누적 경고 수 등)을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경고조치사항을 고지하는 등 명확한 관리규정 기재
- 불이익 금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농번기 일손 참여를 위해 사전승인을 득하고 사업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적극 안내(임금,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미지급)
- 사업 참여자에게 조끼 및 모자(실외), 명찰 패용(실내)을 의무화 하여 도덕적 해이 사전 방지

## ② 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

### ①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강화

- 사업담당자 : 시군구별로 단위사업 담당자를 사업시작전 교육 및 필요시 수시
  -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방법
  - 작업단계별로 작업장내 위험요인 및 정리정돈상태 점검방법
  - 안전관리담당자의 역할 등
- 사업참여자 : 시군구별로 사업시작전, 월 1회(2H) 이상, 작업 시작전·후 및 필요시 수시
  - 안전사고 사례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되, 참여자의 연령별·사업장 등 재해위험 특성에 맞추어 교육실시

### ② 지역일자리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 추진

- 자치단체는 지방노동관서와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 사고 예방대책 및 개선방안을 강구
-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구 성 : 자치단체 지역일자리사업 책임자,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관계관 등
- 운영기간 : '11. 1 ~ 12월(12개월)
- 운영방법 : 원칙적으로 월1회 협의회 개최, 중대사고(사망 등) 발생시 수시
- 주요임무 :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개선방안 수립·협의 등

### ③ 안전 책임자 지정·운영 및 임무

#### ○ 사업장 안전책임자 지정·운영

- 당해 사업장 및 현장을 총괄 감독하는 자를 안전책임자(사업담당 부서장)로 지정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임무 부여
- 사업장별 사업담당공무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반드시 지정
- 사업장별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담당공무원의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 관리요원(십장)을 보조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 안전책임자의 임무

- 일일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작성관리
- 작업투입 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 내용 설명
- 작업투입 전 및 작업중 작업복·보호구 착용지도
- 취급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 사업별 안전보건 대책 중심의 이행상태 확인 관리

【붙임 12】 :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대책

-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 관리대장 작성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등 작업장(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등
- 안전사고 관리대장 작성

【붙임 13】 : 안전사고 관리대장

#### ④ 사업장 안전관리 요령

- 안전보건교육 : 주관(자치단체) / 강사지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해서는 매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 참여자 연령별, 사업별, 작업환경별 특성에 맞는 교육 실시
  - 안전보건교육은 자치단체에서 교육생 집합과 교육장 및 기자재를 준비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강사지원(요청시)
    - \* 자치단체에서 교육계획 수립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지도원)에 강사지원 요청(무료)
  - 파워포인트·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사례 위주 교육 실시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 안전보건점검 : 주관(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사업장·참여자별 및 작업환경에 맞는 특성 교육 실시
  - 작업 단계별로 작업장 내 위험요인·정리정돈 상태 등 점검

####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 도로변 작업시 :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
- 여름 우기철 : 계단 미끄럼 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 바닥청소·청결 유지 및 출입금지, 위험지역 통행시 확인 철저
- 여름철 폭염 : 안전관련 교육 등 휴식 시간제 운영, 실외 사업장 햇빛가림 (그늘)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 등
- 태풍 : 산사태 및 절개지 등 위험지역 작업중지, 세월교 및 계곡 등 물이 빠질때까지 작업중지 등
- 겨울철 : 추락, 넘어짐(전도), 출돌, 붕괴, 화재, 질식·중독, 저체온증, 동상 등

○ 단계별 안전관리 점검방법

구분	시기	점검내용	점검자
↓			
1단계	작업 시작 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구 이상유무 및 착용상태</li> <li>◆ 장비, 설비의 이상유무</li> <li>◆ 작업장 주위 위험요소 확인</li> <li>◆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li> <li>◆ 근로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li> <li>◆ 작업장별로 참여자 특성에 맞게 교육</li> </ul>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2단계	작업 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시간 동안 작업장 수시 순회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여부 확인·지도</li> <li>-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li> </ul> </li> <li>◆ 작업장 주위 위험요소 확인</li> </ul>	“
↓			
3단계	작업 완료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장 내 순회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위험요소 방치여부 확인</li> </ul> </li> <li>◆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li> <li>◆ 공동 작업용 공구·개인보호 장구 등 회수</li> </ul>	“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 자치단체
- 착용지도 및 확인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 《 사업별 주요 보호구 착용작업 (예시) 》

보호구 종류	용 도	주요 대상작업(예시)
안전모, 안전대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감전위험 방지	지붕 개·보수 작업 등 2m이상 고소작업
안전화	물체낙하, 충격,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발 보호	물건낙하, 찰림, 걸려 넘어짐 작업
보안경	비산물·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보호	예초기작업 등 물체의 튼 우려작업
안전장갑	감전, 유기화합물의 피부흡수 방지	베임, 찰림작업 및 위험물 취급작업
방진마스크	분진, 미스트, 흙 흡입방지	청소 등 먼지 및 분진발생 작업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특급사용)
귀마개, 귀뿔개	소음으로부터 청력보호	소음이 90dBA이상 발생하는 작업
호흡용 보호구	산소결핍 예방 및 석면흡입 방지	맨홀작업, 밀폐공간 작업, 집수정 작업
보호복, 덧 신	석면분진 노출방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 ③ 사업장 재해예방 홍보 강화

#### ○ 캠페인 전개

- 주 관 : 자치단체 및 지방노동관서(안전공단) 공동 주관
- 기 간 : 1월 ~ 12월말(월 1회 캠페인 실시)
- 참여대상 : 지방노동관서, 안전공단, 안전협회·보건협회 등
- 장 소 :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사업장 인근

#### ○ 홍보물 제작·배부

- 주 관 : 안전공단 본부
- 주요 내용
  - 중대재해 사고사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가 주지해야 할 사항
  - 전도, 절단 베임 찰림, 충돌, 추락재해 위험요인 중점 관리

- 홍보 방법
  - 안전관리협의회 개최시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홍보물 전달
  - 점검 또는 근로자 교육시 근로자 개인별 홍보물 배부
  - 사업장 인근에서 산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자료 등 배포

#### 4] 근로자 보건 관리

- ① 건강검진 : 사업참여후 1개월 이내 실시
- ②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 주관(자치단체), 확인(사업담당공무원, 안전책임자)
  - 인력 투입 전 고령자·허약자·개인질병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 후 작업배치, 현장에 구급함 비치
  - 필요시 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을 통해 혈압·당뇨 등 간단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투약 등의 조치 후 작업배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통보서 제출
  - 단, 2010 및 2011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가능
  - \* 건강검진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장 배치 조정 및 참여자 관리
- ③ 비상시 보고 연락체계 및 후송방안 확보 : 주관(자치단체), 보고 및 후송(사업 담당공무원, 안전책임자)
  - 사고발생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인근병원 연락처 및 응급 상황발생시 긴급 후송할 수 있는 후송수단 확보

#### ④ 우천시 안전관리 대책

- 작업중 비가 3분이상 계속 내리는 경우 즉시 중단

#### ⑤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비 조치

- 참여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신종인플루엔자 등 예방교육 실시
  - 올바른 손씻기, 기침시 주의사항 등
  -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참고
- 쓰쓰가무시 질환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 확행

### 5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

#### ① 대상사업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리, 기타 행정자료 관리업무 등

#### ② 예방대책

- 사전 보안교육 및 보안각서 징구
  -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철저
- 일모아시스템 등의 ID 및 보안관리 철저
  - 비밀번호 유출 방지, 참여자 교체시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주기적(월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

## 6 산재보험처리 절차

### ① 산재보험 가입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산재보험에 가입
  - 산재보험 적용업종은 산재보상보험법 요율표에 의해 결정되어 단일 업종으로 가입이 어려우므로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해발생통계 산출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시 사업장명에 반드시 “지역공동체”를 표기하여 가입
    - \* 예) ○○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
  - 자치단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되 작업(공사)현장 단위로 가입
    - \* 산재관리번호는 동일하되 개시번호는 공사현장 단위로 부여됨

### ② 재해발생시 처리

- 재해발생시 산재처리
  - 재해발생시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가 재해조사 실시
  -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정서식
- 휴업급여 신청 등 요양처리
  - 재해발생시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붙임 14】 단위사업별 산재보험요율

## 7] 산업 재해자 보상비 지급 절차 및 내용

\*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 ① 사망했을 경우

####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연금을 지급하며 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처리절차 : 유족보상청구서 제출 → 업무상 사망여부 검토 → 수급권자 결정 → 유족보상 지급액 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

\* 유족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반액 일시금(유족연금 50% 감액지급)으로 지급

####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1300일분

#### ○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

- i)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 ii)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20/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기초 연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

### 《 유족보상연금 산정 사례 》

- 평균임금 : 50,000원(유족 4인 : 처, 자녀3)
  - 기본금액 산정
    - $\text{평균임금} \times 365\text{일} \times 47/100\% = 50,000\text{원} \times 365\text{일} \times 47/100\% = 8,577,500\text{원}$
  - 가산금액 산정
    - $\text{평균임금} \times 365\text{일} \times 5/100\% \times 4\text{인} = 50,000\text{원} \times 365\text{일} \times 5/100\% \times 4\text{인} = 3,650,000\text{원}$
  - 유족보상연금액
    - $\text{기본금액} + \text{가산금액} = 8,577,500\text{원} + 3,650,000 = 12,227,500\text{원}$   
따라서 유족보상연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018,958원을 지급

### ○ 장의비

-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
-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 최고금액 : 11,836,020원
  - \* 최저금액 : 8,459,580원(2010. 1. 1 ~ 2010.12.31기준)
- 지급절차 : 장의비 청구 → 장의비 산정 및 지급결정 → 장의비 지급

### ② 부상을 당했을 경우

#### ○ 요양비

-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요양비(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를 지급
- 치료비는 요양이 승인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

- 다만, 응급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가능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이 4일 이상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0.7×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일수

○ 장애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급

\* 장애급여 = 평균임금×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

## ① 신청접수 준비

### ① 안내책자 및 신청서 준비

-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책자와 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를 일정장소에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재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해당)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 동의로 같음)
- 안내책자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임금 등 근로조건, 신청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접수처에 비치
  - 단,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자에게는
    - i) 대상기업 기본현황(회사명, 소재지, 업종 및 연락처)
    - ii) 모집 분야 및 인원
    - iii) 자격요건(자격증 여부, 연령 등)
    - iv) 근무조건(근무시간, 급여, 상여금 및 학자금 지급여부 등)
    - v) 기타 해당 기업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
- 반드시 임금 및 부대경비 지급액 등의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공고문(안) 및 근로조건에 명시
  - 재산 등 부적격자로 사후에 밝혀질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명시하여 사전 민원발생 방지

## ② 직원교육

- 자치단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업무총괄담당자는 신청접수 직원에 대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신청자 안내 철저 및 불편 최소화
  - 읍·면·동 별로 접수대 설치 및 접수 인원 배치
- 자치단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업무담당자에 대한 수시교육

## ② 사업참여자 DB의 적극 활용

- 사업시작일 이전에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확인 등을 위해 일모아시스템 통합 DB 정비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련 시스템 이용 방법 등 사전 숙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 참여함으로써 임금을 이중 수급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선별조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간의 정보 공유체제 확립

## ③ 사업계획 수립

### ① 사업계획의 사전준비 철저

- 각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별 투입예산, 인력규모, 사업내용, 추진방식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준비 철저
- 가구소득,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등 확인을 위해 관련부서 및 기관 간의 상호 협조체제 구축

## ② 사업 추진

- 사업시행기관별, 사업목적별 특성에 따라 사업 시작일 조정가능
- 사업장 준비가 완료 또는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사업별 시작일을 따로 결정 가능

## ④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 2011년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가이드라인(2010. 11.30/고용노동부)에 따라
  - 장애인은 공무원 채용 기준과 동일하게 전체 사업참여 인원의 3%를 의무적으로 고용
  - 장애인을 2%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부담금 납부하여야 함
- \* 출처 :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사업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1437호, 2010.11.30)

## ⑤ 기 타

- 사업 공고 및 참여자 모집시 자치단체 「일모아 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 2011.6월까지 총사업비중 실집행금액이 60%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발굴 및 추진 철저

## ① 사업시행 전

- 종합지침(안) 수립 : '10. 12. 22(수)
- 종합지침(안) 자치단체 의견수렴(2회) : '11. 1. 4(화)
  - 1차 : '10. 12. 27(월), 2차 : '11. 1. 4(화)
- 종합지침(안) 확정을 위한 시·도과장회의 : '11. 1. 7(금)
- 종합지침 확정 및 시도통보 : '11. 1. 11(화)
-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11' 1. 12(수)
- 사업 참여자 모집기간 : '11. 1. 13~1. 19(수)(7일간)
- 사업 참여자 심사(시도, 시군구) : '11. 1. 19~ 1. 31(월)(13일간)
- 사업 참여자 확정 : '11. 1. 31(월)
- 사업 추진 : '11. 3월부터

※ 2차 모집 및 심사기간은 추후 별도통보

## ② 사업시행 후

- 장·차관, 실·국장 사업 현장 점검(월 1회) : '11.3. ~ 11월
- 분석 및 평가 : '12. 1. ~ '12. 3월
- 정 산 : '12. 4. ~ '12. 6월

- 시·도 및 시·군·구 공고 제 ○○호 -

## 「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안)

근로역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1. 3월부터(4개월)
  - \* 자치단별 사업 준비상황 등 여건에 따라 참여인원 및 조기 사업추진 가능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동절기 실시 가능한 사업위주로 준비된 시군구의 경우 1~2월 조기시행 가능
- 모집기간 : 2010. 1. 13(목) ~ 1. 19(수), (7일간)
- 모집인원 : ○○분야 ○○○명

모집분야	인원	비고
①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② 폐자원 재활용 사업		여성10%, 관련분야 전문가 우선
③ 취약계층 접수리 사업		65세이상 20%
④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신체 건강한 남자 65세 이하
⑤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⑥ 주민숙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li> <li>-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li> <li>- 주거환경 및 마을경관 조성사업 등</li> </ul>		
⑦ 청년일자리사업		만29세 미만

※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읍·면·동자치센터에 별도 비치

※ 청년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별도로 참여대상자 접수기간을 달리 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지역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같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같음),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5,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000군 000과 읍면동 ☎ (000)000-000

2011. 1. 12.

○○ 시장 · 군수 · 구청장

**붙임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1. . .)	
성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전화번호			
주요 이력 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1.      2.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인
	취업 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교정시력	좌 (    ), 우 (    )		색	맹	유, 무
기타 사항	주거상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희망 사업	① ② ③		경력사항 기      재			
기타 사항 (본인)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참    여    기    간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    의    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본인			-		
부양자 ※ 직장보험 피부양자 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				-		
연금·재산 정보제공 동    의    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직장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기재	본인		-		
배우자				-		

- 본 신청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1년 1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 신 청 자 확 인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②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③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④ 여성세대주 (가 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증명서 첨부)
⑤ 북한이탈 주민	해당, 해당없음	
⑥ 실직 및 휴·폐업자	해당, 해당없음	
⑦ 청년 대상자(만 29세 이하)	해당, 해당없음	
⑧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해당, 해당없음	
⑨ 노 숙 자	해당, 해당없음	
⑩ 희망·공공근로·노인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최근 3년('08. 1.17)이상 참여여부	해당( , , , ) 해당없음	
⑪ 기 재 사 항	재산세 과세액(2010년 정기분 합산) :        원 장애등급 :        급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⑪ 기타 담당자 의        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1 . . .

○○ 읍·면·동 주민센터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11. . .	본 인		-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시장 귀하 2011년 월 일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5	'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도별 예산배정 현황
------	-------------------------------

**1 총괄**

(단위 : 명/ 천원)

시도별	목표인원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지방비	국비비율 (%)	지방비비율 (%)
계	40,000	248,400,000	124,400,000	124,000,000	50%	50%
서울	6,798	42,158,000	21,079,000	21,079,000		
부산	3,421	21,209,000	10,604,500	10,604,500		
대구	2,545	15,782,000	7,891,000	7,891,000		
인천	1,829	11,340,000	5,670,000	5,670,000		
광주	1,473	9,131,000	4,565,500	4,565,500		
대전	1,279	7,929,000	3,964,500	3,964,500		
울산	760	4,710,000	2,355,000	2,355,000		
경기	7,311	45,326,000	22,663,000	22,663,000		
강원	1,591	9,864,000	4,932,000	4,932,000		
충북	1,554	9,632,000	4,816,000	4,816,000		
충남	1,726	10,702,000	5,351,000	5,351,000		
전북	2,309	14,314,000	7,157,000	7,157,000		
전남	2,212	13,714,000	6,857,000	6,857,000		
경북	2,514	15,585,000	7,792,500	7,792,500		
경남	2,340	14,508,000	7,254,000	7,254,000		
제주	338	2,096,000	1,048,000	1,048,000		
행안부		400,000	400,000	0		

- 시·도별 예산배정 기준
  - '11년도 자치단체 사업수요 : 50%
  - '10년도 희망근로사업 차상위 신청인원 : 30%
  - '09.12.31기준 인구수 : 20%
- 시·군·구 배정은 '11년도 사업 수요, '10년도 희망근로사업 차상위계층 신청 비율 등을 검토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자율 결정

##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총 사업비의 80%)

(단위 : 명/ 천원)

시도별	목표인원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지방비	국비비율(%)	지방비비율(%)
계	32,000	198,400,000	99,200,000	99,200,000	50%	50%
서울	5,438	33,726,400	16,863,200	16,863,200		
부산	2,737	16,967,200	8,483,600	8,483,600		
대구	2,035	12,625,600	6,312,800	6,312,800		
인천	1,463	9,072,000	4,536,000	4,536,000		
광주	1,179	7,304,800	3,652,400	3,652,400		
대전	1,023	6,343,200	3,171,600	3,171,600		
울산	608	3,768,000	1,884,000	1,884,000		
경기	5,849	36,260,800	18,130,400	18,130,400		
강원	1,273	7,891,200	3,945,600	3,945,600		
충북	1,244	7,705,600	3,852,800	3,852,800		
충남	1,380	8,561,600	4,280,800	4,280,800		
전북	1,847	11,451,200	5,725,600	5,725,600		
전남	1,770	10,971,200	5,485,600	5,485,600		
경북	2,012	12,468,000	6,234,000	6,234,000		
경남	1,872	11,606,400	5,803,200	5,803,200		
제주	270	1,676,800	838,400	838,400		
행안부	0	0	0	0		

### 3 청년일자리사업(총 사업비의 10%)

(단위 : 천원)

시도별	목표인원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지방비	국비비율(%)	지방비비율(%)
계	4,000	24,800,000	12,400,000	12,400,000	50%	50%
서울	680	4,215,800	2,107,900	2,107,900		
부산	342	2,120,900	1,060,450	1,060,450		
대구	255	1,578,200	789,100	789,100		
인천	183	1,134,000	567,000	567,000		
광주	147	913,100	456,550	456,550		
대전	128	792,900	396,450	396,450		
울산	76	471,000	235,500	235,500		
경기	731	4,532,600	2,266,300	2,266,300		
강원	159	986,400	493,200	493,200		
충북	155	963,200	481,600	481,600		
충남	173	1,070,200	535,100	535,100		
전북	231	1,431,400	715,700	715,700		
전남	221	1,371,400	685,700	685,700		
경북	251	1,558,500	779,250	779,250		
경남	234	1,450,800	725,400	725,400		
제주	34	209,600	104,800	104,800		
행안부	0	0	0	0		

#### 4 마을기업육성사업(총 사업비의 10%)

(단위 : 천원)

시도별	목표인원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지방비	국비비율(%)	지방비비율(%)
계	4,000	24,800,000	12,400,000	12,400,000	50%	50%
서울	680	4,215,800	2,107,900	2,107,900		
부산	342	2,120,900	1,060,450	1,060,450		
대구	255	1,578,200	789,100	789,100		
인천	183	1,134,000	567,000	567,000		
광주	147	913,100	456,550	456,550		
대전	128	792,900	396,450	396,450		
울산	76	471,000	235,500	235,500		
경기	731	4,532,600	2,266,300	2,266,300		
강원	159	986,400	493,200	493,200		
충북	155	963,200	481,600	481,600		
충남	173	1,070,200	535,100	535,100		
전북	231	1,431,400	715,700	715,700		
전남	221	1,371,400	685,700	685,700		
경북	251	1,558,500	779,250	779,250		
경남	234	1,450,800	725,400	725,400		
제주	34	209,600	104,800	104,800		
행안부	0	0	0	0		

붙임 6	<b>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리카드</b>
------	------------------------

(주관부서 :            )

사 업 명 [ 유 형 별 ]		사업장 지 도 관리자	공 무 원 ( 연 락 처 )
			현 장 관 리 원 ( 연 락 처 )
사 업 목 적	○ ○		
추 진 개 요	○ 사업기간 : ○ 사업 량 : ○ 사업 비 :    천원 (인건비 :    / 재료비:    )		
사 업 장 위 치		투입인원	1일 :    명 연인원 :    명
월            별 추 진 계 획	○ 3월 : ○ 4월 : ○ 5월 : ○ 6월 :		
사 업 성 과 [ 기 대 효 과 ]	○ ○ ○ ○		
특 이 사 항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및대책]	○		
비            고	○		

(뒷면)

구 분		주 요 추 진 실 적
월 별 추 진 상 황	3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현 장 사 진		
<input type="radio"/> 사업 전		<input type="radio"/> 사업 중·후



## 5. 안전관리 점검표

항목	이상유무	추가조치
<b>① 안전보건교육</b> ○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 신규투입자에 대한 추가교육여부 ○ 당일 작업 내용에 적합한 교육여부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참여(   명)/ 이수(   명) 신규(   명)/ 이수(   명)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b>② 개인보호구 지급.착용</b> ○ 지급보호구 종류 및 수량 ○ 보호구 착용교육 실시여부 ○ 보호구 착용실태 * 회전체 근접작업 말릴방지를 위해 복장, 두 발, 상태 확인 및 실장갑 착용금지	<input type="checkbox"/> 지급보호구   종   개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b>③ 장비 및 설비 이상유무</b> ○ 장비의 관리상태 ○ 보호장비의 부착여부(해당시 적용) ○ 장비 및 설비 사용요령교육여부 ○ 장비 및 설비 사용실태	<input type="checkbox"/> 장비   종   개 <input type="checkbox"/> 부착 <input type="checkbox"/> 미부착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b>④ 작업장관리 상태</b> ○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여부 ○ 주위차량과 충돌방지조치여부 등 ○ 작업장주위 위험요소 제거여부 * 위험 작업시 작업 감독자 배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input type="checkbox"/> 조치 <input type="checkbox"/> 미조치 <input type="checkbox"/> 조치 <input type="checkbox"/> 미조치	
<b>⑤ 비상시 연락체계 및 응급조치</b> ○ 현장에 구급함비치여부 ○ 인근병원연락처 및 후송수단 확보 ○ 비상시 보고체계 확보여부	<input type="checkbox"/> 비치 <input type="checkbox"/> 미비치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 6. 특이사항

- 
- 

상기와 같이 작업하였음

2011. . .

작성자 :                   (인)

<b>붙임 8</b>	<b>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b>
-------------	--------------------------

일련번호 : 제 2011 -      호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년 월 일 ( )	
	주소				
	연락처	주택 :	휴대폰		
이력사항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붙임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등 고용에 관항 사항	붙임 : 근로계약서				
퇴직·해고·사망 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붙임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계약서
- \* 사업장별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근로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011 - 호

## 근 무 확 인 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재 직 상 황	④ 직 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과 근무)		
	⑤ 재직기간	2011.03.02~2011.05.12(0월 0일)		
⑥ 용 도	○○기관 제출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음(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 ○ 시 장

붙임 1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출처 :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 제1항 관련 별표 2)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 제 대 상 가 족 의 수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일반	다자녀																
0	795	-	-	-	-	-	-	-	-	-	-	-	-	-	-	-	-	-	-	-	-
795	800	30	-	-	-	-	-	-	-	-	-	-	-	-	-	-	-	-	-	-	-
800	805	90	-	-	-	-	-	-	-	-	-	-	-	-	-	-	-	-	-	-	-
805	810	150	-	-	-	-	-	-	-	-	-	-	-	-	-	-	-	-	-	-	-
810	815	200	-	-	-	-	-	-	-	-	-	-	-	-	-	-	-	-	-	-	-
815	820	260	-	-	-	-	-	-	-	-	-	-	-	-	-	-	-	-	-	-	-
820	825	320	-	-	-	-	-	-	-	-	-	-	-	-	-	-	-	-	-	-	-
825	830	380	-	-	-	-	-	-	-	-	-	-	-	-	-	-	-	-	-	-	-
830	835	440	-	-	-	-	-	-	-	-	-	-	-	-	-	-	-	-	-	-	-
835	840	490	-	-	-	-	-	-	-	-	-	-	-	-	-	-	-	-	-	-	-
840	845	550	-	-	-	-	-	-	-	-	-	-	-	-	-	-	-	-	-	-	-
845	850	610	-	-	-	-	-	-	-	-	-	-	-	-	-	-	-	-	-	-	-
850	855	670	-	-	-	-	-	-	-	-	-	-	-	-	-	-	-	-	-	-	-
855	860	730	-	-	-	-	-	-	-	-	-	-	-	-	-	-	-	-	-	-	-
860	865	780	-	-	-	-	-	-	-	-	-	-	-	-	-	-	-	-	-	-	-
865	870	840	-	-	-	-	-	-	-	-	-	-	-	-	-	-	-	-	-	-	-
870	875	900	-	-	-	-	-	-	-	-	-	-	-	-	-	-	-	-	-	-	-
875	880	960	-	-	-	-	-	-	-	-	-	-	-	-	-	-	-	-	-	-	-
880	885	1,020	-	-	-	-	-	-	-	-	-	-	-	-	-	-	-	-	-	-	-
885	890	1,070	-	-	-	-	-	-	-	-	-	-	-	-	-	-	-	-	-	-	-
890	895	1,130	-	-	-	-	-	-	-	-	-	-	-	-	-	-	-	-	-	-	-
895	900	1,190	-	-	-	-	-	-	-	-	-	-	-	-	-	-	-	-	-	-	-
900	905	1,250	-	-	-	-	-	-	-	-	-	-	-	-	-	-	-	-	-	-	-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 제 대 상 가 족 의 수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일반	다자녀																
905	910	1,310	-	-	-	-	-	-	-	-	-	-	-	-	-	-	-	-	-	-	-
910	915	1,360	-	-	-	-	-	-	-	-	-	-	-	-	-	-	-	-	-	-	-
915	920	1,420	-	-	-	-	-	-	-	-	-	-	-	-	-	-	-	-	-	-	-
920	925	1,480	-	-	-	-	-	-	-	-	-	-	-	-	-	-	-	-	-	-	-
925	930	1,540	-	-	-	-	-	-	-	-	-	-	-	-	-	-	-	-	-	-	-
930	935	1,600	-	-	-	-	-	-	-	-	-	-	-	-	-	-	-	-	-	-	-
935	940	1,660	-	-	-	-	-	-	-	-	-	-	-	-	-	-	-	-	-	-	-
940	945	1,710	-	-	-	-	-	-	-	-	-	-	-	-	-	-	-	-	-	-	-
945	950	1,770	-	-	-	-	-	-	-	-	-	-	-	-	-	-	-	-	-	-	-
950	955	1,830	-	-	-	-	-	-	-	-	-	-	-	-	-	-	-	-	-	-	-
955	960	1,890	-	-	-	-	-	-	-	-	-	-	-	-	-	-	-	-	-	-	-
960	965	1,950	-	-	-	-	-	-	-	-	-	-	-	-	-	-	-	-	-	-	-
965	970	2,000	-	-	-	-	-	-	-	-	-	-	-	-	-	-	-	-	-	-	-
970	975	2,060	-	-	-	-	-	-	-	-	-	-	-	-	-	-	-	-	-	-	-
975	980	2,120	-	-	-	-	-	-	-	-	-	-	-	-	-	-	-	-	-	-	-
980	985	2,180	-	-	-	-	-	-	-	-	-	-	-	-	-	-	-	-	-	-	-
985	990	2,240	-	-	-	-	-	-	-	-	-	-	-	-	-	-	-	-	-	-	-
990	995	2,290	-	-	-	-	-	-	-	-	-	-	-	-	-	-	-	-	-	-	-
995	1,000	2,350	-	-	-	-	-	-	-	-	-	-	-	-	-	-	-	-	-	-	-
1,000	1,005	2,410	-	-	-	-	-	-	-	-	-	-	-	-	-	-	-	-	-	-	-
1,005	1,010	2,470	-	-	-	-	-	-	-	-	-	-	-	-	-	-	-	-	-	-	-
1,010	1,015	2,530	-	-	-	-	-	-	-	-	-	-	-	-	-	-	-	-	-	-	-
1,015	1,020	2,580	-	-	-	-	-	-	-	-	-	-	-	-	-	-	-	-	-	-	-
1,020	1,025	2,640	-	-	-	-	-	-	-	-	-	-	-	-	-	-	-	-	-	-	-
1,025	1,030	2,700	-	-	-	-	-	-	-	-	-	-	-	-	-	-	-	-	-	-	-
1,030	1,035	2,760	-	-	-	-	-	-	-	-	-	-	-	-	-	-	-	-	-	-	-

**붙임 1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출석부**

사업명 : 00체험장 조성사업  
 사업관리 부서 : 00시 지역경제과  
 사업장 현장관리자(십장) : 박관리

사업기간 : 2011. 3. 2 ~ 2011. 6. 15  
 사업관리 담당자 : 지역경제과 토목주사 홍길동  
 근로자 : 김지역(주소 : 000면 00리 111번지)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			3/2	3/3	3/4	3/5	3/6	
근로자			김지역	김지역	김지역			
십 장			박관리	박관리	박관리			
사업담당			홍길동	홍길동 09:00-11:00(2H)	홍길동 14:00-18:00(4H)			
근로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짜	3/7	3/8	3/9	3/10	3/11	3/12	3/13	
근로자								
십 장								
사업담당								
근로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월 결 산 ※	작업장 총 근무일수 : 20일							
사업관리 담당자가 직접	근로 자	근무내역 : 정상근무 18일, 결근1일, 지각1회(2시간), 조퇴1회(4시간) 총근무시간 : 154시간 [(18일*8시간=144시간)+(8시간-2시간=6시간)+(8시간-4시간=4시간)]						

※ 출석부 확인 시간 : 근로자와 십장은 작업개시 전까지, 사업관리 담당자는 매일 현장 확인·점검과 동시 실시

-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한 준수사항이며, 동 내용외에도 작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 대책 수립 추진

□ **공통 사항**

법 조항	구 분	내 용
법제10조	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개요, 원인 및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법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및 시설에 대한 경고, 안내 등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법제23조 1,2,3,4항 및 산업안전기 준에 관한 규칙	안전 조치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토사구축물 붕괴위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법제24조 1,2항 및 산업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보건 조치	○사업을 할 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 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법제26조 1항	작업중지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함
법제31조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세부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및 8의2 참조

법 조항	구 분	내 용
법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법제38조2	석면조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함
법제38조4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함(석면조사 생략의 경우 포함)
법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농약 등)를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모두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 근로자가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함 -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법제43조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결과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질병에 걸린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단,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함

## 1 폐자원 재활용 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폐자원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 분리작업 중 손, 발이 날카로운 물질에 찔림</li> <li>○ 중량물 운반시 허리부상(근골격계 질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수거 작업시 안전화, 장갑 착용 손이나 발로 누르는 행위 금지</li> <li>○ 2인1조 작업 및 작업전 스트레칭 실시</li> </ul>

## 2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희망의 집수리 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희망의 집수리 - 슬레이트 지붕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레이트 지붕 개·보수 작업중 슬레이트 및 지붕 채광창(Sun-light) 파손 으로 추락</li> <li>○ 지붕 개구부 및 끝부분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락</li> <li>○ 지붕 이동 중 돌출물에 걸려 넘어짐으로 인한 추락</li> <li>○ 석면분진 노출에 의한 근로자 및 인근 주민피해 우려</li> <li>○ 불법 폐기물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 상부 작업 시 경량의 작업발판(폭 30cm 이상) 사용</li> <li>○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li> <li>○ 건물내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li> <li>○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및 지붕 위로 올라가기 위한 승강로 설치</li> <li>○ 작업전 지붕구조 사전 숙지</li> <li>○ 혹서기,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금지</li> <li>○ 해체된 지붕재의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는 행위 금지</li> <li>○ 분진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li> <li>○ 근로자에게 보호구 지급·착용(방진 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신발)</li> <li>○ 작업장내 보호구 미착용자에 대한 출입금지(경고표지 설치)</li> <li>○ 작업장내에서 흡연 및 음식섭취 금지</li> <li>○ 작업장 인접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 설치</li> <li>○ 석면함유 잔재물(작업중 사용한 보호구 및 작업복 등 포함)은 비닐 등 포대에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li> </ul>
취약계층 주택 개선 (도배, 장판, 전기시설교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재해</li> <li>○ 창문 교체 수리 중 근골격계질환</li> <li>○ 작업장 바닥 적재물에 의한 전도</li> <li>○ 지붕 수리를 위해 이동식 사다리 및 지붕위에서 추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전차단기 부착 전원에 접속 사용</li> <li>○ 2인1조 작업 및 작업전 스트레칭 실시</li> <li>○ 정리정돈 철저 및 실내장판, 도배작업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사용</li> <li>○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에는 2인1조 작업, 지붕위 작업시에는 작업발판 사용</li> </ul>

### 3]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다문화가족, 복지관 어린이집 등 지원사업	○ 음식조리중 뚜껑을 열다가 스팀에 화상, 계단 등을 통행중 넘어짐	○ 뜨거운 조리기구를 다룰 경우 안전장갑 착용, 안전통로 확보 등
	○ 중량물 운반시 허리부상(근골격계 질환)	○ 2인1조 작업 및 작업전 스트레칭 실시

### 4] 주민숙원사업

#### ○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 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 신호위반, 주행속도 초과 운행 차량에 의한 충돌	○ 안전한 장소에서 신호 및 제한속도 준수 계도를 실시하고 형광 작업복 착용
	○ 교통안전 지도시 차량 충돌	

#### ○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 관리 사업	○ 준비운동 미실시로 심장마비	○ 물놀이 위험장소 안전관리요원 배치시 준비운동 철저히 심장마비 예방
	○ 구조작업순서 미준수	○ 구조작업 순서 준수 철저
농어촌 마을 잣길 사고 다발지역 개선 등	○ 배수로 보수공사 중 법면 또는 벽면 붕괴	○ 흙막이지보공 설치 또는 굴착구배 준수
	○ 배수로 흙관 작업 중 백호에 깔림	○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 보수·정비 작업시 돌 등의 취급과정에서 손 협착	○ 안전장갑 착용
	○ 다수의 작업자가 동시에 팽이 등 도구 사용 중 협착, 찢림	○ 작업자간 안전간격유지, 개인도구 사용전 안전교육
	○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청소 등 작업시 차량에 충돌, 인도턱이나 이물질에 걸려 넘어짐	○ 관리자를 배치하여 차량 유도 및 근로자의 도로 침범 통제 ○ 작업중 감속표지판 및 안전표지시설(차량유도 라바콘 등)을 설치
	○ 진드기 유충 등에 의한 찌르거나무시병 등 감염	○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토록 조치(소매와 바지 끝은 틈이 없도록 토시, 각반 등을 사용하여 밀착) ※ 필요시 해충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 착용 ○ 풀밭 등 감염 우려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않도록 조치 ○ 작업 후에 진드기 제거를 위하여 즉시 샤워를 하도록 지도 ○ 두통,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 곳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 ○ 작업 후에 의복, 양말 등은 세탁

## ○ 주거환경 및 마을 경관 조성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주거환경 개선 - 경로당 등 복지시설 개보수,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 공공시설 개보수	○ 이동식 사다리 사용 보수작업 중 추락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 사다리 상하부 전도방지조치 ○ 사다리 이용시 검정품 안전모 착용
	○ 화장실 개보수용 자재 등에 걸려 넘어짐	○ 개보수 현장 주기적 정리정돈 실시
	○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경로당 시설 등 도색(옥내)작업시 화재 및 유기용제 노출	○ 담배 등 화기사용 금지 및 작업장소에 소화기 비치, 방독마스크 착용
	○ 전동공구 등을 이용하여 보수 작업시 낙하, 찢림	○ 낙하방지용 벨트 착용 및 안전장갑 착용
	○ 이동식 전선의 충전부 노출 등에 의한 감전	○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규격에 적합한 코드릴 사용
	○ 자재 취급시 찢림, 걸려 넘어짐	○ 안전장갑 착용, 원자재 정리정돈
	○ 수공구 취급 시 찢림, 협착	○ 작업전 안전교육, 무리한 행동자제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 지방하천 살리기, 하수구 배수구 개·보수	○ 개보수를 위한 자재운반 중 전도	○ 안전통로 설치 등 가설통로 확보
	○ 제방상부에서 자재정리 중 추락	○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배수로 지반 붕괴	○ 흙막이지보공 또는 굴착 구배 준수
	○ 중량물 설치·이동 중 협착	○ 자재유도로프 사용 등으로 협착재해예방
	○ 중량물 인양용 와이어로프 이탈, 불량 인양공구 사용시 낙하	○ 자재 운반, 인양 로프는 체인 사용, 수시점검·확인을 통하여 불량품 사전제거
공공안내 표지판 정비	○ 이동식사다리 작업 중 추락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상하부 전도방지조치, 안전모 착용
	○ 적재함 위 상하차 작업시 추락	○ 로프 사용전 점검 및 안전모 착용
	○ 이동식 크레인 부착용 차량의 아웃트리거 불안정 지지	○ 아웃트리거 안정도 유지 및 지반상태 확인
	○ 휴대용 전동공구 낙하, 찢림	○ 낙하방지용 벨트 및 안전장갑 착용, 장시간 공구사용 금지
	○ 이동식전선 충전부 노출 감전	○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코드릴 사용
	○ 대형간판 운반시 근골격계질환	○ 2인1조 작업 및 작업전 스트레칭 실시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공공체육시설 관 리 및 점검·보수, 공원내 체육 및 놀이시설 정 비, 공중화장실 정 비, 어린이놀이터 정 비 사업	○ 이동식 사다리 사용 보수작업 중 추락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 사다리 상하부 전도방지조치 ○ 사다리 이용시 검정품 안전모 착용
	○ 화장실 개보수용 자재 등에 걸려 넘어짐	○ 개보수 현장 주기적 정리정돈 실시
	○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복지시설 등 도색(옥내)작업시 화재 및 유기용제 노출	○ 담배 등 화기사용 금지 및 작업장소에 소화기 비치, 방독마스크 착용
	○ 전동공구 등을 이용하여 보수 작업시 낙하, 찢림	○ 낙하방지용 벨트 착용 및 안전장갑 착용
	○ 이동식 전선의 충전부 노출 등에 의한 감전	○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규격에 적합한 코드릴 사용
	○ 자재 취급시 찢림, 걸려 넘어짐	○ 안전장갑 착용, 원자재 정리정돈
○ 수공구 취급 시 찢림, 협착	○ 작업전 안전교육, 무리한 행동자제	

## 5 생활용품 수리사업

사업명	재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자전거 및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수리사업	○통로 미확보에 의한 넘어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공기압축기 폭발, 회전부 협착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에 점검을 실시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 밖의 연결부위의 이상 유무
	○선풍기등 회전날에 의한 협착위험	○선풍기·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덮개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절연 파괴 등 누전에 의한 감전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

**붙임 13**

**안전사고 관리대장(엑셀 작성)**

연번	광역구분	자치단체	사고자	사고일	주민등록번호	나이	성별	사고유형	사고발생내용	통계유형	산재처리결과					
											소계	산재확정	산재아님	심사중	미신청	산재여부확정일
	합계										4	1	1	1	1	
1	서울시	종로구	김일동	10-3-2	460202-2020123	64	여	사망	넘어짐	사망	1	1				10-3-2
2	서울시	종로구	홍행복	10-3-3	531122-1020341	57	남	중상	미끄러짐	추락전도	1		1			10-3-20

- <작성요령>** : 제출시점까지 일어난 사고를 모두 제출(11월 말까지 월보를 보면 사업시작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어난 사고 모두를 제출)
1. 사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여 관리(필요시 요양보험금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정확히 기재)
  2. 산업재해 관리 범위 : 작업 중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밀접한 관련으로 일어난 사고  
 \*본인 지병, 제3자 가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미신청한 자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고는 제외
  3. 사고일 : 반드시 엑셀 날짜 형식으로 기록(2010-9-2, 또는 2010/9/2)
  4. 사고유형 : 사망, 중상, 경상, 단순 부상중에서 택일(콤보 상자내에서만 택일)
    - 사망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주 원인으로 72시간 내 사망한 경우
    - 중상 :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중상이상의 것
    - 경상 : 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 ○ 단순부상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부상
  4. 통계유형 : 골절절단, 추락전도, 빠임, 개인질병, 교통사고, 베임찔림, 부딪힘, 벌레물림, 감염성질환, 사망, 기타중에서 택일  
 \*주) 통계유형은 통계를 위한 분류 기능이므로 실제 사고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
  5. 산재 처리 결과
    - 해당란에 숫자1(숫자1일임)을 입력 - 숫자 1외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것(특히공백, 스페이스바만 눌러지 말것)
    - 최종확정일 : 산재확정, 산재아님 등 산업재해 결과 여부가 확실히 결정된 날짜를 기록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b>1. 광업</b>			
석탄광업	354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1	기구제조업	18
채 석 업	234	수제품 제조업	33
석회석광업	67	기타제조업	10
기타 광업	72	<b>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b>	36
		<b>4. 건 설 업</b>	
<b>2. 제조업</b>		<b>5. 운수창고 및 통신업</b>	
식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33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7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4	취급사업	9
목제품 제조업	51	항공운수업	1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26	운수관련 서비스업	11
인쇄물 가공업	10	창 고 업	65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6	통 신 업	
인쇄업	18	<b>6. 임 업</b>	328
화학제품 제조업	9	<b>7. 어 업</b>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33	어업	13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87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26	<b>8. 농 업</b>	28
고무제품 제조업	31	<b>9. 기타의사업</b>	
도자기제품 제조업	2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유리 제조업	32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2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47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0
또는 금속가공업	12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제련업	3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23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도 금 업	25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1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7	교육서비스업	6
전자제품 제조업	36	<b>0. 금융 보험업</b>	
선박건조 및 수리업	2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1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 해외파견자: 17/1000	

연번	신청자		조회대상자			수급자 (부양자+ 피부양자)	구 분		최종월 부과금액(원)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역	직장		
1	김순돌	770125-1826383	부	홍길동	490101-2928735	5		0	23,120원	

## &lt;작성요령&gt;

- 1) 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 및 조회대상자의 자료를 작성
- 2)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 지부)에서는 수급자(부양자+피부양자), 지역 및 직장 구분과 최종월 부과금액(원)을 확인하여 작성
- 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4) 개인정보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단에서 신청서 샘플을 요청할 수 있음

**①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

해당업종	분류번호	규모기준
1. 제조업	C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B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8.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0. 도매 및 소매업	G	
11. 숙박 및 음식점업	I	
12. 금융 및 보험업	K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사업	R	
15.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E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16. 교육서비스업	P	
17.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S	
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1)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함  
2)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임

**② 혼돈하기 쉬운 중소기업****1)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개인시설 학원 등 영리 개인사업자
- 영리법인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영농조합법인 등)

**2)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 비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등 비영리 개인사업자
-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확정내시 통보**

1.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9238(2010.12.21)호 및 일자리정책과-1845(2010.10.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오니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정금액 및 재정분담비율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분담액(확정내시)	<b>37,910,200</b>	<b>18,955,100</b>	<b>9,477,550</b>	<b>9,477,550</b>
분담액(가내시)	38,272,000	19,136,000	9,568,000	9,568,000
증감내역	<b>▲361,800</b>	<b>▲180,900</b>	<b>▲90,450</b>	<b>▲90,450</b>
분담율	100%	50%	25%	25%

나. 예산 변동 사유 및 감액 금액

-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통보된 마을기업 육성사업(구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사업비가 당초 가내시 금액 보다 증액됨에 따라, 25개 자치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가내시 금액에서 균등 감액

• 자치구당 사업비 감액 금액 : 14,472천원

(국비 : 시비 : 구비 ➔ 7,236천원 : 3,618천원 : 3,618천원)

다. 자치구별 확정내시 내역 :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감액된 구비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 변경 처리 요망

붙임 :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확정내시액 1부. 끝.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통보

---

1.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205(2011.01.12)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나. 사업기간 : 3.2 ~ 6.30(1차), 8.1 ~ 11.30(2차)

※ 3.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3.31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연차 유급휴가 수당 미지급하므로 자치구 실정에 따라 조기 사업시행 가능

다. 참여인원 : 8,000명(1,2차 각각 4,000명)

라. 예산규모 : 37,910백만원(국비 18,956, 시비 9,477, 구비 9,477)

마. 접수기간 : 1.24(월) ~ 1.28(금)[5일간]

바. 대상사업

- 안정적·시장형 일자리사업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등 8대 사업

※ 청년일자리사업(총 예산의 10% 의무 배정)

- 지역 일자리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사업

사. 사업효과

-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 청년미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창출로 청년 취업유도 촉진
- 일자리사업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회복 촉진

붙임 : 1.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종합지침 1부. 끝.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업상담 등 사후관리 철저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제8장 신청자 및 참여자의 관리」에 따라 선발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을 위한 취업상담 등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각 자치구에서는 참여자 취업 지원을 위한 아래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활용방법

- 지역내 구직자 특성에 맞춰 관련 취업정보센터 등 예약 후 방문 상담
- 취업박람회 참석
-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나. 운영방식

- 1개월당 16시간 참여가 원칙
- ※ 16시간 범위내의 참여 시간은 공적사유로 판단하여 전액 임금 보전
- 사업 성격상 부적정한 경우 축소 운영 가능
- ※ 단, 전일제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8시간 이상 참여

## 서울특별시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창출추진단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용산구청장(고용정책과장), 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광진구청장(희망일자리추진반장), 동대문구청장(고용창출추진단), 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추진단장), 성북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강북구청장(일자리정책추진단장), 도봉구청장(사회복지과장),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서대문구청장(경제발전기획단장), 은평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마포구청장(일자리진흥과장), 양천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강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구로구청장(일자리지원과장), 금천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관악구청장(일자리사업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남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송파구청장(일자리지원담당관), 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추진단장)

주무관      박정주      공공일자리팀장      박동수      일자리정책과장      04/14 박대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02494      (      ) 접수      (      )

우      100-7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6321-4026 /전송      02-3707-9387 / [jlepark7@seoul.go.kr](mailto:jlepark7@seoul.go.kr) / 대시민공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추가 보완(2차) 및 하반기 추진일정 통보

1. 지역일자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제3장 「신청자 접수」에서 하반기(2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접수 방법 및 추진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자치단체에서는 참여자 신청 접수 및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하반기 사업참여자 접수 방법

- **(당초)** 2차(하반기) 접수방법 및 절차는 1차(상반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
  - 1차 탈락자는 신청서만 접수(구비서류 면제, 소득 및 재산조회는 1차 조회자료 활용)
- **(변경)** 상반기 신청자중 탈락자에 대하여 상반기 신청서로 같음(참여의사 확인(전화), 신청서 제출 생략)
  - 단위사업별 참여신청자가 부족한 사업, 신규사업에 대하여 최소한도내에서 시·도별 분산 모집(모집시기는 매월 15일 전후 1주일)
  - 사업특성상 연계 가능한 사업장은 선발 즉시 사업착수 추진

4.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발시 “**결혼이주 여성 신청자**”는 참여자 선발자격 기준 범위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선발기준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여 취업기회 확대(신설)

- 가점 범위 : 자치단체별로 20점 범위내 자율적으로 가점 결정

### 5. 하반기 사업 추진일정

- 개선방안 확정 및 시도 통보(6월초)
-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대상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6월~, 자치구)
  - 사업시행계획, 대상사업 발굴 및 사전심사, 인원 및 예산배정 등
-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지자체) : 6. 13(월) ~ 6. 24(금)**
  - 기 신청자는 참여의사 확인후 서면심사
  - 참여자가 부족한 단위사업은 모집 공고후 심사선발
- \*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선발기간 조정가능

6. 6월1일 개최한 시도과장회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자치구에서는 하반기 참여대상자 선정 및 생산적 사업발굴 등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자의 임금 차별화 방안에 대한 의견 있는 자치구는 2011. 6. 10(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현황 1부. 끝.

##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구1-25

---

주무관 박세중 공공일자리팀장 박동수 일자리정책과장 06/03 박대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04951 ( ) 접수 ( )  
우 100-7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5 / http://www.seoul.go.kr  
전화 3707-9376 / 전송 3707-9387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

---

1. 서울시 지역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일정 등 아래와 같이 협조사항에 대하여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협조일정을 감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 1) 일 정

- 모집기간 : 2011.6.24~6.30(5일간) - 25개 자치구 의견수렴, 동일 적용
- 재산조회 : 2011.7.8(금) - 서울시 일괄 행정안전부로 조회
- 최종선발 : 2011.7.25~7.27(3일간) 자치구 개별 본인 통보

### 2) 사 업

o 정부시책 우선인력지원,배정

- 도로명 주소의 인감대장 수기정리,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중소기업취업지원, 취약계층 집수리 등
- 중소기업 취업지원 : 선발인원의 9% 참여

### 3) 참여자

- 1단계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하반기 사업 참여배제
- 1단계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사업 참여자, 전문기술인력은 하반기 사업 참여허용(단,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
- 기타사항은 기 통보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104951(2011.6.3)호 참조

. 끝.

##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세중** 공공일자리팀장 **박동수** 일자리정책과장 06/09 **박대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05162 ( ) 접수 ( )

우 100-7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5 / <http://www.seoul.go.kr>

전화 3707-9376 / 전송 3707-9387 / [wise67@seoul.go.kr](mailto: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마철과 폭염 혹서기 안전 및 보건관리 교육 철저 시행 협조**

1. 지역일자리창출에 노력하시는 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지역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사업장의 장마철을 대비한 사전 안전점검 및 혹서기 폭염에 따른 참여자의 산업안전 보건관리 등 여름철 공공일자리 사업장과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붙임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장마철 및 혹서기 안전관리 대책. 끝.

## 서울특별시장

수신자 서구1-25, 서사01-29, 서관과01-117, 서울특별시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울특별시상수도연구원장 (상수도연구원총무과장)

주무관 **박세중** 공공일자리팀장 **박동수** 일자리정책과장 **06/20 박대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05700 ( ) 접수 ( )

우 100-7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5 / <http://www.seoul.go.kr>

전화 3707-9376 /전송 3707-9387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추가 보완 통보(3차)

1.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5156(2011.07.2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1882(2011.05.30)호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발굴·지원안내”

협조요청에 따라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제4장 대상자의 선발에서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대상자 선발시 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정된 “우선돌봄 차상위”에 대하여도 소득 및 재산조회 없이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점수표에 의하여 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돌봄 차상위 : '11.5월 소득재산 정기변동 및 부양의무자 정비 결과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대상자 중, 기존 차상위 지원체계에 들어가는 대상(차상위 자활,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부가급여,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이외의 자를 말함.

끝.

#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정주 공공일자리팀장 박동수 일자리정책과장 07/25 주용태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07601 ( ) 접수 ( )

우 100-7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07-9376 /전송 02-3707-9387 / [jleepark7@seoul.go.kr](mailto:jleepark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12066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1.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공공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구민수	박동수	10/19 주용태

## 201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계획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City of Design  
Member of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since 2010

# '1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계획

- ◆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하반기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 추진하고,
- ◆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진단 및 새로운 사업발굴 등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 추진근거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 점검계획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7066(2011.10.05)】

##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11. 10. 20.(목) ~ 10. 21.(금)
- 점검지역(5개구) 및 점검자

일 자	점검지역	점 검 자
10. 20.(목)	서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구민수
10. 21.(금)	종로구, 중구	박정주

- 점검대상 사업(2개 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 취약계층사업
  -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사업

## □ 주요 점검사항

- 지역공동체 일자리(취약계층) 사업
  - 예산확보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적정 여부
  -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계획 수립 여부
    - 단위사업장별 배치계획 인원(사업장별 7명 이상)
    - 단위사업별 모집여부
    - 생산적·안정적 일자리사업 발굴 노력(단순 취로사업 성격의 사업 배제) 여부
  - 사업장 안전관리
    - 동절기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 지역일자리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실적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지정·운영 실적
    - 단위사업별 안전관리 점검표 비치 및 점검 여부
  - 참여자 복무관리
    - 간부 공무원 현장점검 실시 여부(월 1회 이상)
    - 참여자 출석 1일 3인(근로자, 십장, 담당공무원) 확인제 실시 여부
    - 사업장별 작업일지(계획 및 실적) 작성 및 부서장 확인여부
  -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의 일모아시스템 등록 여부
  - 기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애로사항 등
- 청년일자리사업
  - 지역특성에 맞는 대상 사업발굴, 공모 방법 및 선발의 적정성
  - 참여자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체계 구축 여부
  - 예산확보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적정 여부

-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의 일모아시스템 등록 여부
- 기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애로사항 등

## 점검방법

- 점검표를 해당 자치구에 사전 통보하여, 관련 증빙자료 현장확인

## 향후계획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계획 통보 : '11. 10. 18 (화)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 : '11. 10. 21 (금)

- 붙임 1. 행정안전부 현장점검계획 통보 공문 1부  
2. 행정안전부 현장점검계획 1부.  
3.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결산계획 통보

---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8571(2011.11.29.)호와 관련입니다.

3.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예산집행실적 분석 등 결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불임 서식을 작성하여 2012. 3. 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예산집행을 제고, 사업장 안전복무관리, 겨울철 재해예방 등 사업 관리 및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결산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은 2012년 상반기 중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2012년도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시점 : 2011. 12. 31일 기준

- 대상사업 : 2011년도 추진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전반

- 제출기한 : 2012. 3. 2(금)

붙임 : 1. 결산계획(국고보조금 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1부.

2. 사업별 결산 서식 1부

3. 비목별 결산 서식 1부

4. 국고반환내역 서식 1부

5. 수범사례 서식 1부.

6.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공공일자리팀장 박동수 일자리정책과장 12/05 주용태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14158 ( ) 접수 ( )  
우 100-750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빌딩 5층 일자리정책과 /http://www.seoul.go.kr  
전화 02-6321-4026 /전송 02-3707-9389 / mskoo@seoul.go.kr / 비공개(5)

책자명	2011년도 정책자료집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발행일	2012. 2. 29
발행처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참여자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강병호 일자리정책관 주용태 일자리정책과장 박동수 공공일자리팀장 한문섭(행정6급), 박정주(행정7급) 구민수(행정7급)
편집	행정 7급 구민수 (☎6321-4026)
인쇄	